공정거래
Q&A 모음

DOOSAN

목 차

Ⅰ. 공정거래법의 기본 개념

Ⅱ. 내부거래 중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Ⅲ.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Ⅳ. 하도급거래

Ⅴ. 불공정거래 행위

Ⅵ. 대규모 유통업법

Ⅰ. 공정거래법의 기본 개념

Ⅰ. 공정거래법의 기본 개념

1.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2.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3. 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
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
5. 특수관계인이란 누구인가요 ?
6. 계열회사 편입이나 제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7.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8.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란 무엇인가요 ?
9. ㈜두산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인가요?
10. 해외 법인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 인정되나요?
11.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Ⅰ. 공정거래법의 기본 개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역할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담합,독점적 지위남용을 금지하고 경쟁을 촉진
  ②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를 개선, 부당한 내부거래를 시정
  ③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
  ④소비자 역량 강화 및 소비자 피해 예방
- 특히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 소관 법률 위반 사건을 심리, 의결할 수 있으며 공정위의 결정은 법원의 1심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

-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의미하며 동일인의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①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②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두 개이상의 회사의 집단

-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동일인'이라 함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룹의 '총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4.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요 ?

- 공정위에서는 대기업 집단 규제를 집단의 규모별로 차별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규모 5 조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자산 규모 10 조원 이상)과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규모 5 조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 년 중 시행령 개정 예정)
-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다음과 같은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 적용됩니다.
  ① 공시의무(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②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위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에 추가하여 다음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③ 상호 순환출자 금지
  ④ 채무보증 금지

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5. 특수관계인이란 누구인가요 ?

특수관계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그 범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② 동일인 관련자.

③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②번의 '동일인 관련자'는 동일인의 친족(배우자, 혈족 6 촌, 인척 4 촌),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 및 비영리법인, 계열사의 임원 등을 의미합니다.

6. 계열회사 편입이나 제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공정거래법 제 2 조 2 호 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에서는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요건을 신규로 갖추거나 기존 계열회사가 비계열회사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공정위로 계열회사의 편입 또는 제외 신고를 하게 됩니다.
- 계열 편입 혹은 제외 신고에 대하여 공정위의 결정 시점 이후부터 계열 편입,제외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 보통 기업집단이 신고를 한 후 공정위의 결정까지 1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매각 등으로 실질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니라도 하여도 공정위의 결정 전까지의 기간은 공정거래법상의 계열회사로 계속 간주되어 각종 의무가 유지됩니다.

7.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의 개념은 어떻게 되나요?

- 공정거래법 제2조 1호에서는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업자 개념은 위의 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들과의 거래에도 공정거래법이 적용됩니다.

- 또한 공정거래법은 제 2 조 1 호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 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사업자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란 무엇인가요 ?

-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이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것을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지주회사의 경우 소유지배구조를 단순하게 할 수 있고, 계열사의 합병/매각 등 조직의 유연성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소액으로 대규모의 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집중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주회사에 행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에서 의미하는 지주회사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 지주회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 제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①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
② 자회사 발행주식의 40% 이상 보유
③ 계열사 이외의 회사 주식의 5% 이상 보유 금지
④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보유 금지
⑤ 금융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외 주식 보유 금지

9. **㈜두산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인가요?**

- ㈜두산의 경우 '15년 까지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해당하였으나 전자/산업차량 등 자체 사업부문의 성장 및 신사업의 확대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인 "자회사의 주식(지분)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할 수 없게 되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제외 되었습니다.

10. **해외 법인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 인정되나요?**

- 공정거래법에서 말하는 계열회사는 일반적으로 국내 계열회사를 의미합니다.
  해외 계열사의 경우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외 법인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회사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여도 이를 특수관계인에 포함하여 규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외 법인과의 거래 관계 등은 공정거래법상 이사회 승인이나 공시 등의 의무는 없습니다.
- 하지만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및 '이사 등 회사의 거래'[1] 등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정위에서는 '17 년 5 월부터 해외계열사의 주주 및 출자현황 공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 공정거래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공정거래법은 민법, 상법 등 대등한 경제주체를 전제로 일반적 법률 관계 규율을 위한 법규와 다르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제력 집중 방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타 법규와의 적용 범위가 중첩될 경우 공정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볼 것입니다.
- 다만 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가 공정거래법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타 법규가 공정거래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 개의 법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요건만이 아니라 타 법규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Ⅱ. 내부거래 중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

Ⅱ. 내부거래(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1. 일감몰아주기란 무엇인가요 ?
2.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3.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 조건이란 무엇인가요 ?
4. 일감몰아주기의 예외조건 중 효율성이란 무엇인가요 ?
5. 일감몰아주기의 예외조건 중 보안성이란 무엇인가요 ?
6. 일감몰아주기의 예외조건 중 긴급성이란 무엇인가요 ?
7. 일감몰아주기나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8.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합리적 고려나 다른사업자와의 비교'란 어떤 의미인가요 ?
9.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규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10.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거래규모가 적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
11. 경쟁입찰로 통해 계열사과 거래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12. 내부거래와 관련된 다른 법규는 없나요 ?
13. 내부거래시 정상가란 어떻게 판단하는건가요 ?

14. 기존에 장기간 거래하던 계열사와의 수의계약 체결의 경우도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나요 ?

15. 제품 개발단계부터 계열사와 협력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나요 ?

16. 당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와의 거래도 부당지원행위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17. 계열사간의 거래시 사업기회의 제공(일명:통행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18. 계열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조건보다 1개월 정도 조기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부당지원에 해당하나요 ?

19. 해외 자회사의 직원 교육 등도 부당한 지원 등에 해당하나요 ?

20. 두타몰이나 두산베어스 등에서 상품권이나 입장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나요 ?

21. 불용자산을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매각 공고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나요 ?

Ⅱ. 내부거래(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1. 일감몰아주기(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란 무엇인가요 ?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시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지급하는 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거래를 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 공정거래법에서 지정한 위반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③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④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2. 일감 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

- 특수관계인이 일정지분(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규제의 대상회사들이 됩니다.

  두산그룹의 경우 ㈜두산, 네오플럭스, 네오홀딩스, 빅앤트가 해당합니다.
- 그러므로 각 계열사가 위의 4개 회사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됩니다.

3.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예외 조건이란 무엇인가요 ?

- 2번 질문에서 설명한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위반유형 중 ④번 항목인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의 경우 '기업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거래는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즉 거래내용이 예외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감몰아주기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일감몰아주기의 예외조건 중 효율성이란 무엇인가요 ?

-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 다른 사업자와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의 예외항목 중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는 거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는 "규제 대상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 등과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량 증가, 품질개선 또는 기술개발 등의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거래로서 아래에 예시에 해당하는 거래 등입니다.

① 상품의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간의 거래로서 해당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소재 등을 공급 또는 구매하는 경우

② 회사의 기획·생산·판매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를 산업연관성이 높은 계열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③ 주된 사업영역에 대한 역량 집중, 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회사의 일부 사업을 전문화된 계열회사가 전담하고 그 일부 사업과 관련하여 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④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

⑤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5. 일감몰아주기의 예외조건 중 보안성이란 무엇인가요 ?

-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란 규제대상사가 아닌 다른회사 등과 거래할 경우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정보 등이 유출되어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① 전사적(全社的) 자원관리시스템, 공장, 연구개발시설 또는 통신기반시설 등 필수시설의 구축·운영,핵심기술의 연구·개발·보유 등과 관련된 경우

② 거래 과정에서 영업·판매·구매 등과 관련된 기밀 또는 고객의 개인정보 등 핵심적인 경영정보에 접근 가능한 경우

6. 일감몰아주기의 예외조건 중 긴급성이란 무엇인가요 ?

-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란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전산시스템 장애 등 회사 외적 요인으로 인한 긴급한 사업상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7. 일감몰아주기나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계열사와의 거래시 비계열사와의 거래에 준하는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서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8.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란 어떤 의미인가요 ?

-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하여 합리적 고려나 비교없이 상한 규모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과정에서

①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또는 거래조건 등 해당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하고

② 이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평가하는 등 해당 거래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거래 상대방의 적합한 선정과정이 없는 경우" 입니다.

- 즉, 비계열사와의 거래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토를 실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거래를 결정하기 전에 시장가격을 분석하고 경쟁사 등과 가격, 품질 등을 비교하여 가장 최선의 거래처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경쟁입찰 등을 통해서 선정하고 수의계약인 경우 검토결과 해당 계열사와의 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거래를 진행하여야 하며 검토 내용 등을 품의서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9.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규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공정거래법 제 23 조의 2 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에 따른 규제이며,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공정거래법 제 23 조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1 항의 7 호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금지에 따른 규제로 각각 규제의 대상과 내용이 다릅니다.

- 구체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은 전체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규제내용을 보면 부당지원 규제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 7 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 대여금 · 인력 · 부동산 · 유가증권 · 상품 · 용역 ·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 · 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 일감몰아주기와 계열사간 부당지원의 경우 위반유형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사전에 합리적 고려나 비교를 하였는지를 규제하는 부분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검토 없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계열사와 거래를 하여도 상품가격이 정상가 수준이고 한쪽이 유리한 거래조건이 아니면서 통행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당지원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일감몰아주기 규제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거래규모가 적으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

-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규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거래 전에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법에는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것을 위반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 거래당사자간 상품·용역의 해당 연도 거래총액(2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이 200 억원 미만이고,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00 분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입니다.
- 이에 따라 ㈜두산 내 BG 와 특정 계열사간의 거래규모가 200 억 미만일지라도, ㈜두산 전체 합산시 200 억을 초과하므로 거래규모와 상관없이 부당지원의 Issue 가 있습니다.

11. 경쟁입찰 등을 통해 계열사과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나요 ?

-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된 계열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거래규모 등에 따라 이사회 사전 승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 내부거래와 관련된 다른 법규는 없나요 ?

- 상법, 세법 등에 관련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상법에는 '사업기회의 유용금지(제 397 조의 2)',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제 398 조)' '특별배임죄(제 662 조의 1 항)', 상장회사의 특례(제 356 조)' 등이 있으며, 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 52 조의 1 항)', '상증세법상 증여의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5 조의 3)', '이전가격 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4 조)' 등이 있습니다.

13. 내부거래시 정상가란 어떻게 판단하는건가요 ?

- 공정거래법에서 이야기하는 정상가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 가격'입니다.
-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정상가로 판단하고 있으며 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사품을 근거로 추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상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4. 기존에 10 년 정도 동일한 제품을 계열사에서 구매해오고 있었습니다.

거래관계,Line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한다고 봐야하나요 ?

- 예외조건 중 효율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거래는 일감몰아주기관련 규제 관련 예외사항 중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거래가격이 정상가 수준인지를 확인하고 거래를 하여야만 합니다.

15. 제품 개발단계에서 계열사와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협업관계를 구축하였는데, 본 생산에 들어가면서 대량발주를 할 때 계열사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부당한 지원이나,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나요 ?

- 위와 같은 거래는 일감몰아주기관련 규제 관련 예외사항 중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는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밀하고 유기적인 거래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노하우 축적, 업무 이해도 및 숙련도 향상 등 인적·물적으로 협업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경우"와

" 거래목적상 거래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인력 보유 현황, 대규모·연속적 사업의 일부로서의

밀접한 연관성 또는 계약이행에 대한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도 제 3 자가 보았을 때도 효율성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비용절감, 판매증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 또한 이 경우에도 거래가격은 정상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만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당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자회사와의 거래도 부당지원행위 규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라 하더라도 독립거래주체로 판단하므로 부당지원행위 규제대상이 됩니다.

17. 계열사간의 거래시 사업기회의 제공(일명:통행세)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 계열사의 역할이 꼭 필요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별다른 역할이 없음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역할이 미미함에도 과다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당한 사업기회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경우 실제 역할이 충분하고 수수료 규모가 적정하더라도, 합리적인 검토와 비교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한 행위로 판단할 수 도 있습니다.

18. 계열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계약조건보다 1개월 정도 조기에 지급하고자 하는데 부당지원에 해당하나요 ?

-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의 방식은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대금지급조건, 납품조건 등에서도 비 계열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라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계열사를 지원할 의도가 명백하다면 부당지원에 해당합니다.
  (품의서나 담당자간 주고받은 E-mail 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
- 만약의 조기지급을 꼭 해야만 한다면 지급기일 단축에 대한 이자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19. 해외자회사 (당사의 중국생산법인)의 직원들을 국내 사업장에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련 비용은 국내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지원 등에 해당하나요 ?

-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은 국내 법인에만 해당하므로 중국생산법인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중국생산법인의 임직원의 역량이 당사의 경영성과에 영향이 있고, 비용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는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0. 두타몰이나 두산베어스 등에서 상품권이나 입장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나요 ?

- 회사가 업무상이나 직원 복리후생상 필요에

따라 정상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계열사의 매출 부진 등에 따른 지원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한 지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1. 불용자산을 계열사 등을 대상으로 매각 공고 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나요 ?

- 계열사를 대상으로 매각 공고를 실시 후 매각하는 절차는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거래이므로 자산 매매 가격이 정상가라면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Ⅲ.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Ⅲ.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1.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및 공시 제도란 무엇인가요 ?
2. 대규모 내부거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3. ‘특수관계인을 위하여’는 어떤 의미인가요 ?
4.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및 공시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5. 대규모 내부거래 발생시 이사회의 의결은 의무사항인가요?
6.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라는 것이 사전 승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7. 이사회 승인 및 공시 이후 거래금액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8. 내부거래 기준에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9.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차료와 관리비를 일괄 수취할 경우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하나요?

Ⅲ.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1.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및 공시 제도란 무엇인가요 ?

-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2 및 시행령 17 조의 8 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거래 등을 하는 경우 사전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공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본 규정이 계열사 등과의 거래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나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계열사,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건이 발생되면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대규모 내부거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2 는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아래와 같은 4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① 가지급금/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② 주식/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③ 부동산/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④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①~③ 의 거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각 거래의 개별 금액이 50 억원 또는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거래의 경우 이사회 승인 및 공시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④의 거래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분기에 이루어질 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 억원 또는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거래 유형이 ①~③ 유형인지 혹은 ④ 유형에 속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거래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수관계인을 위하여'는 어떤 의미인가요 ?

- 특수관계인과 직접거래를 하지 않아도 거래의 목적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규모 내부거래 규제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어 계열사(A)가 발행한 주식, CP 등을 비계열사(B)를 통하여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C)가 인수하는 경우,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은 A 와 B , B 와 C 이지만 실질적으로 C 가 A 와 직접 거래한 것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 즉 형식적 거래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행위로 특수관계인에 손익이 귀속되는 구조라면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로 볼 여지가 있어, 거래 실질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승인 및 공시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이사회 승인 및 공시 대상이 되는 대규모 내부거래는 아래의 2가지 형태로 구분되며 거래 형태에 따라 거래 대상,거래금액 산정 기준 등이 다릅니다.
  ①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유가증권/자산거래)
  ② 상품/용역을 거래하는 경우 (상품용역거래)
- 자금/유가증권/자산거래는 전체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상이 전 계열사임)
  상품용역거래의 경우에는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대상하는 거래가 해당됩니다. 두산그룹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거래처는 ㈜두산, 네오플럭스, 네오홀딩스, 빅앤트, 디아이피 홀딩스, 생물자원, 두타몰, 베어스, 디엘아이, 오리콤, 한컴, 메카텍,DAE 등입니다. (이런 분류는 지분구조의 변동 시 변경이 있는 경우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계열사 여부를 반드시 유관부서에 상세 확인 받아야 합니다
- 금액의 산정방식의 경우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금/유가증권/자산거래시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 금액' 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시의 거래금액은 '연간임대료+환산연간임대료(보증금 X 이자율*)' 로 산정합니다.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담보제공의 경우 담보한도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총액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 총액으로, 퇴직연금 등 총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50 억 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공시대상 1 건 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상품용역거래의 경우는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 매입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됩니다.)

- 공시대상 거래행위의 판단기준도 상이합니다. 자금/유가증권/자산거래의 경우 '동일거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 대상에 대한 거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상품용역거래의 경우는 동일 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유무를 판단할 때 유가증권 거래 등은 1 회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고, 상품용역 거래는 분기별 거래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대규모 내부거래 발생시 이사회의 의결은 의무사항인가요?

- 원칙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발생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2 의 5 항에서는 상장법인이 상법 제 393 조의 2 에 의하여 설치한 내부거래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부거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도 이사회 승인과 동일하게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하지만 대규모 내부거래 중 공정거래법의 적용만이 아니라 상법 등 다른 법규, 회사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가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부거래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공정거래법 상의 요건만 충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전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

6.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라는 것이 사전 승인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 의결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거래 계약 체결이 되기 전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나,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건의 거래를 모두 이사회 승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분기별로 일괄하여 승인을 받거나 매년 초 1년의 거래를 예상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7. 이사회 승인 및 공시 이후 거래금액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공정거래법 제 11 조의 2 의 1 항에 의하면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때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요내용의 변경은 공정위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 8 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래목적/대상의 변경, 거래상대방의 변경, 거래금액/조건의 변경 등을 의미합니다.

- 그 중 거래금액의 변경에 대하여는 당초에 의결, 공시한 것보다 2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를 주요내용의 변경으로 판단하므로 이사회 승인 및 공시 이후 거래금액이 20%이상 증가, 감소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변경 금액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8. 내부거래 기준에서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 현재 자본총계의 판단은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16년 12월 중 해당 내부거래가 발생했다고 하여도, 가장 최근에 확정된 15년 12월말 기준의 재무제표상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내부거래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전일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가 50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50억원을 승인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산의 경우에는 50억원 초과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9.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임차료와 관리비를 일괄 수취할 경우 별개의 계약으로 봐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과 부동산 관리 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거래는 자산거래로,부동산 관리용역에 대한 거래는 상품용역거래로 구분됩니다.
- 다만 임차료와 관리비를 동일 계열사가 일괄 수취하여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비도 임차료에 포함하여 거래규모를 파악하므로 지급 내역,계정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Ⅳ. 하도급거래

Ⅳ 하도급거래

1. 하도급 거래의 개요 Q1 ~ Q4

2. 서면발급 Q5 ~ Q12

3. 하도급 대금의 지급 Q13 ~ Q20

4. 하도급 대금의 결정 Q21 ~ Q37

5. 하도급 대금의 감액 Q38 ~ Q41

6. 부당한 반품 Q42 ~ Q47

7. 부당한 발주취소 Q48 ~ Q50

8. 기타 Q51 ~ Q61

-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 부당특약
- 부당한 경영간섭
- 기술자료 등

Ⅳ 하도급거래

1. 하도급거래란 무엇인가요 ?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이하하도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하도급거래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받는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는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하도급법 제 2조 1항) 입니다.

- 수급사업자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을 의미하며 매출액 3,000 억 미만인 중견기업은 하도급 대금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하도급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2. 중견기업도 하도급법을 적용하여야 하나요 ?

- '16 년 1 월부터 하도급법 중 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중견기업에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산의 경우 거래하는 상대방이 매출액 3,000 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상대방입니다.

  (적용 내용 : 60 일 이내 대금지급,현금화 기일이 60 일을 초과하는 경우, 어음할인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

3. 중소기업, 대기업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

- 하도급법상에서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자의 정의 등을 따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5천억 미만인 사업자 중 매출액이 아래기준에 충족하는 회사를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별표 1] <개정 2015.6.30.>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하지만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등의 경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계산 방식의 차이나 유예기간의 적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5. 하도급법 상의 서면교부의 대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하도급법에서 지정한 필수서면 교부 대상은 아래의 7가지입니다.
  ① 기본 계약서 (추가, 변경계약서 포함)
  ② 하도급 계약 확인서면
  ③ 하도급 대금 감액서면
  ④ 기술자료 제공요구서
  ⑤ 목적물 등 수령증명서
  ⑥ 검사결과 통지서
  ⑦ 고객사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6. 계약서 상에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아래의 6가지 입니다.
  ①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내용
  ②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③ 목적물 검사방법 및 시기
  ④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자재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제공대가,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⑥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7.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 등의 수령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령통지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 하도급법이나 시행령 등에 목적물 수령통지서 양식이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물품명, 수량, 인수일자, 인수자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면 됩니다.

8. 계약변경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도 변경내역 통지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하나요 ?

- 하도급법에서 지정한 필수 교부 서면상에도 변경계약과 변경내역 통지서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별도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경내역 통지서에는 발주자와 원사업자간의 계약내용의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변경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으므로 변경계약서로 변경내역 통지서를 갈음하기가 어렵습니다.

9. 계약서 등에 “제품 품질기준은 별도 협의”로 기재하고 관행상으로 구두로 검사기준을 합의하는 경우에도 서면 미발급에 해당하나요 ?

- 검사기준은 계약서상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별도의 협의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면 미발급에 해당합니다.

- 이와 별도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반품하는 경우는 부당한 반품에 해당 할 수 있으니, 사전에 검사기준을 꼭 합의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10. 서면발급을 E-mail 이나 ERP 등의 전산 프로그램 상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 계약서 등에 전자서명 후 ERP 등으로 발급하는 경우도 적절한 서면교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상호합의가 필요한 항목들은 E-mail 로 통보하는 것은 정당한 서면교부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하도급대금 감액동의서를 E-mail 로 통보하고 일정기간 내에 회신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행위 등

11. 계약을 진행할 때 확정되지 않은 사항등이 있는 경우에도 서면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

- 거래가 발생하기전에 계약조건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조건을 확정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확정을 지을 기한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한은 00 년 00 월 00 일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AA)와 BB 계약을 체결 후 확정할 예정'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12. 정식발주 부서가 아닌 생산팀 등에서 구두로 발주하는 것을 막고자 당사 구매부서에서 정식 발주절차를 통해서 발주하지 않은 주문(현업부서 등의 주문)에 대해서는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도 하도급법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

-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하도급법상의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의 '하도급 공정화 지침' 상에 "회사 임직원이 그의 업무에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으며, 실제 적용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은 하도급법상에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준,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하도급 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 현금화할 수 있도록 지급하여 합니다. 만약 현금화 되는 기간이 60 일을 초과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어음 수수료나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할인료 등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 만약 발주사(고객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거나 선급금을 받은 경우라면 당사도 하도급업체에 당사의 대금수령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발주사가 당사에 지급한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14. 목적물 수령일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나요 ?

- 목적물 수령일은 하도급 형태에 따라서 인정되는 기준일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제품/상품의 경우 해당 제품을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당사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판단합니다.
  다만 거래가 빈번하고, 사전에 합의(계약서 등에 명시)가 된 경우라면 월 1회 이상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볼 수 있습니다.
- 용역 중 역무의 공급은 역무가 종료된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판단하고 있으며,지적 성과물의 경우 검사 요청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있습니다.

15. 발주자에게 당사가 프로젝트 용역대금을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투입된 하도급업체의 용역대금을 당사가 늦게 지급하면 안되나요 ?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도급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만큼 발주자로부터 당사가 대금을 늦게 받았다고 해서 당사의 대금지급의무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16. 하도급 대금 지급시 외담대의 만기일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일 되는 날을 만기로 지급할려고 하는데, 해당일이 토요일입니다. 이런 경우 월요일을 만기로 설정하여도 되는가요 ?

- 만기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설정하여도 됩니다.

17. 용역하도급의 경우도 용역 종료 후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60 일 이내 지급 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

- 용역하도급의 경우 역무의 공급과 지적성과물과 관련된 용역이 각기 다릅니다.

  유지보수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역무가 종료된 시점을 목적물 수령일로 파악하므로 계약기간이 월간단위인 경우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60 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되지만 IT 프로젝트 등의 지적성과물의 경우 검사요청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보고 있습니다. 즉,10 월 15 일에 검수 요청을 해서 10 월 20 일에 합격처리 후 10 월 31 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10 월 15 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8. 외상매출담보대출(이하 외담대)는 전자어음에 해당하나요 ?

- 외담대는 납품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기업(주로 원청 업체)이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 업체가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수령하고 추후 외상매출채권 만기시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결제방식입니다.
  전자어음은 약속 어음이고, 외담대는 은행 대출의 일종으로 전자어음과 달리 전자어음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두산은 전자어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거래에서도 외담대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분류되며 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음할인료가 아니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16 년 12 월 말 기준으로 공정위가 고시한 어음할인료는 연 7.5%이며,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율은 7.0% 입니다.

19. 담당자의 실수로 대금지급이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외상매출담보대출(이하 외담대) 형태로 지급한 경우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은행 등과 상의하여 만기를 조정해서 정상 지급시점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급일자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하여야 하고 외담대의 만기일이 60 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는데 사전에 지급일자 조정이 되지 않았다면 어음 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연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0.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당사가 선급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이행보증증권

가입을 의무화 할 수 있고, 보증보험료 등을 사유로 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선급금 지급 의무기일(15일)에서 제외됩니다.

- 수급사업자가가 보증보험 수수료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선급금을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선급금 포기 사유 등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수급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선급금을 지급해야만 하므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서 등에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부당특약에 해당하므로 하고 있는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1. 하도급법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

- 하도급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당한 단가란 "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단가" 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가 혹은 최저가 입찰시 최저가격, 이전 계약이 있을 경우 이전 가격에 원재료비, 인건비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산된 단가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최저가 입찰시 최저가 보다 낮은 가격,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전년대비 5% 인하 등으로 설정한 목표단가까지 단가를 낮추는 경우에는 부당한 단가결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2.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 예정가가 필요한가요 ?

-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출된 사전예정가가 꼭 필요합니다.
  사전 예정가를 입찰시스템 등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찰가를 사유로 유찰시켜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참여업체의 입찰서류 미비등을 사유로 유찰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23. 사전 예정가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나요 ?

- 사전예정가는 합리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며 산출근거/방식의 합리성은 당사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시장가격 조사하여 선정하거나, 기존 가격에 원재료비 변동 등의 항목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전년대비 5% 인하 등으로 결정하여 해당 가격 이하로 입찰가격이 내려오도록 재입찰을 반복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4. 일률적인 단가 인하는 무조건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하나요 ?

-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해 공정위가 제시하는 예시는 아래 3가지 항목입니다.
  ①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② 종전 계약에 비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품목별로 그 하락률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출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③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 (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25. 입찰과정에서 제품의 설계가 변경되어 예정가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 등이 필요할까요 ?

- 기존에 진행 중인 입찰을 취소하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입찰 안내에 제품 설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별도 입찰로 다시 진행하여야 합니다.

26. 당사와 협력업체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원가절감을 하는 경우 단가를 인하하여도 되나요 ?

- 당사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의 기여도를 자체적으로 산출하고 그 부분만큼의 인하를 강요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당사가 원가절감에 기여한 부분이 전혀 없음에도 원가 인상효과의 대부분을 당사가 가져가는 형식의 가격 결정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27. 동일제품을 생산하는 A,B,C 사업장에 동일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가 공장별로 다릅니다.

그 중에 단가가 높은 2 개 업체의 단가를 가장 저가업체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도록 협상하는 것도 위법 사항인가요 ?

- 3 개 업체의 가격 중 최저가격업체를 시장가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는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업체와 체결한 계약기간, 계약 수량 등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정위에서는 허위로 작성한 다른 회사의 가격을 보여주면서 단가인하를 유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거래중인 가격에 맞게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28. 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나 1 개업체만 참여하여 유찰 후 참여 업체를 대상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업체의 입찰시 제안가는 당사의 예정가 이하였으나 수의계약으로 전환 후 견적을 요청한 결과 추가적으로 인하된 단가를 제출하여 업체의 제시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하도급법상의 문제가 있을까요 ?

-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경쟁입찰방식으로 재입찰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최저가 입찰시 최저가 이하의 가격(부당한 단가)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경쟁입찰이 유찰되었으므로 시장가격을 해당 업체에게 참여업체 부족으로 유찰되었음을 정확히 통보하고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전제로 가격을 협상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을 경우에도 당사의 예정가격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다면 예정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당사의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낮추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29. 저희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주요원재료의 국제 시세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해당 비율만큼의 가격 인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원재료 가격에 변동에 따른 단가 협상은 가능합니다.
  물론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무조건 단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 협의하에 단가를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 가격이 인하되어 단가를 인하한 경우 추후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단가를 올려줘야만 합니다.

30. 국제 원자재 시세가 하락하여 수급사업자와 가격 협상을 10 월 1 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수급사업자는 5% 인하를 제시하고, 저희는

10% 인하를 요구하여 협상하다가 10 월 25 일에 5% 인하로 합의하였습니다.
월간 거래물량에 대해서 월합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는 품목이므로 10 월 매입분을 5% 인하한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단가인하의 소급적용에 해당하나요 ?

- 하도급 거래시 대금은 발주시점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5 일 이후 발주분부터 인하된 가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약 합의전 발주한 물량을 포함한 10 월 입고분 전체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단가 인하의 소급적용으로 간주되어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 이 경우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된 경우라 하여도 하도급법의 위반사항이 됩니다.

31. 현재 수의계약으로 운영중인 품목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

- 현재 공급 중인 업체와 계약서 등에 명기된 계약종료기한, 방식을 준수하고, 경쟁입찰 전환시 현재 업체에도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업체가 보유중인 재고를 소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32. 경쟁입찰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중인데 매출확대로 부품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입찰 시 2 위 업체에게 현재 거래업체 수준의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것은 하도급법상의 문제가 없나요 ?

- 현재 납품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협상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물량 등을 정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33.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가격 30%, 기술력 70%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자와 수의 시담을 통해 최초 입찰시 최저가업체보다 낮은 가격으로 단가를 결정하여도 하도급법에 위반이 되나요 ?

- 공정위에서는 우선협상자 선정 후 재협상하는 방식도 경쟁입찰과정에서 재입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까지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후 사전 예정가나 최저 입찰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하하는 경우 부당한 단가결정으로 판단한 사례가 많습니다.
- 하도급법을 고려할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가격을 배제하고 기술력 등으로 1차 평가를 하여 우선협상자를 선정하여 수의시담 방식을 통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34. 기존의 단일거래업체에서 복수업체로 변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새로 발굴한 업체들에게 기존업체 가격으로 납품을 하는 경우 일정물량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수의시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 기존 업체와 입찰/계약시 보장한 물량 이상을 구매한 경우라면 거래처를 복수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35. 수급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년간 운영 중입니다. 기존에 투입되던 인력들은 고숙련자들로서 임금수준이 높았으나, 최근

투입된 인력들은 파견직들로 임금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단가를 인하하고자 하는데 하도급법상 문제가 없나요 ?

- 지적성과물과 관련된 용역의 경우 투입된 인력의 수준이나,규모 등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 '과업' 이나 '산출물' 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목적물인 과업/산출물의 변경없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ata Center 관리용역의 경우 계약의 목적물인 Data Center 관리에 대한 과업(해당업무)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단순히 투입인력의 교체를 사유로 대금을 인하하는 것을 하도급법상의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36.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비 인상을 사유로 단가인상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재료비가 인상된 영향만큼 무조건 인상해줘야 하나요 ?

- 아닙니다.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내용은 수급사업자가 원재료비의 인상을 사유로 단가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단가인상을 꼭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인으로 단가 유지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단가의 인상이 없어도 하도급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에 원재료 가격 변동을 이유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가 있으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단가를 변경하여야 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인건비나 다른 원부재료의 가격변동 등을 반영하여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가조정 요청 등은 정식 공문으로 접수하고 협의를 진행할 때는 회의록 등의 근거 자료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37. 수급사업자가 지속적인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단가 인상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업체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

- 하도급법에는 원재료의 가격상승을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단가조정을 요청한 경우 성실히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인건비 인상 등을 사유로 한 단가조정요청에 대한 협의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하지만 가능하면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적절한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기존 단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38. 수급사업자에게 사용설명서를 납품받아서 제품에 포함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설명서에 기재 내용 중 일부 문구가 수정되어 당사 비용으로 수정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였하고 해당 비용을 차감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 부당한 감액에 해당하나요 ?

- 기재내용을 수급사업자가 잘못 기재하였다면 감액이 가능하지만, 당사 사정으로 변경

되었음에도 감액을 하는 경우 부당한 감액에 해당합니다.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감액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합의를 하여야 하며 감액서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39. 하도금 대금을 감액할 경우 꼭 서면으로 감액 사유 및 금액을 통보하여야 하나요 ?

- 하도급 대금의 감액의 경우 하도급법에 규정된 것 처럼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①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②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③ 감액금액

④ 공제 등 감액방법

⑤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40. 부당하지 않은 대금 감액은 어떤 경우인가요 ?

- 공정위의 하도급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는 “감액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원사업자가 정당성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액은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 공정위가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에서 제시한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하도급계약 체결 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하도급대금 산정자료에 중대하고 명백한 착오를 발견하여 이를 정당하게 수정하고 그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②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과 다른 목적물 또는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정해진 납기일을 초과하여 납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납품된 목적물을 반품하고, 반품된 해당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③수급사업자가 수리가 가능한 불량품을 납품하였으나 반품을 하여 수리를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어 원사업자가 스스로 수리하여 사용하고 그 비용을 감액하는 경우.
단,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리비용 산정기준이 필요하며, 감액은 이러한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한정되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급사업자의 장비관리 소홀로 인해 장비가 훼손되어 해당 장비에 대한 적정수리비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등입니다.

41. Claim 발생시 하도급 대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

- 사전에 상호 합의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Claim 등으로 당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상세하게 통보하고, 서로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추후 합의과정, 상계대금 산출방식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 등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42. 품질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에 대해서 검사결과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

- 검사결과 통지서는 하도급법에 규정되어 있는 필수 서류이므로 꼭 발급하여야 하며, 특히 불합격품에 대해서는 불합격사유와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법 등에는 특별한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3. 당사의 생산일정이 변경되어 해당 제품을 3개월 정도 후에 생산에 투입하게 되어 공간문제로 반품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입고시키고자 하는데 부당한 반품에 해당하나요 ?

- 당사의 생산일정의 변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반품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한 반품에 해당합니다.
반품한 제품을 일정기간 후에 다시 발주하고 입고를 진행하므로 협력업체에 피해가 없으므로 부당한 반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도급법의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44. 물품이 입고된지 6개월 후에 투입되어 불량이 확인되어 반품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

- 하도급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고 10일 이내에 반품여부를 업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고 후 6개월 경과한 후 반품하는 것은 부당한 반품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5. 공정에 부품 물량이 부족하여 검사를 생략하고 생산공정에 제품을 투입하였는데, 부품 불량으로 발생한 손실을 청구하고, 해당 물품을 반품처리해도 괜찮은가요 ?

- 입찰과정이나 계약서에 원칙적으로 검사를 생략한 것은 당사의 결정사항이므로 반품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한 반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불량품을 양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모두 협력업체에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46.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부품을 원인으로 발생한 Claim이나 불량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 수급사업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계약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상액의 선정 등은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보상 방법등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가 자체적으로 산출한 손실금액을 일방적으로 상계처리를 하는 등의 방식은 부당한 감액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47. Claim으로 인한 보상청구시 청구 금액 등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Claim 형태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청구 금액은 물품대금과 품질불량 등으로 발생한 직접비용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48. ERP에서 생산계획을 기준으로 2개월치 물량이 자동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E-mail로 입고 2주전에 입고일자 및 물량을 확정하면서 물량이 조금씩 변동되어 입고 된 이후 발주량보다 적은 수량으로 입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하는가요 ?

- 당사의 생산일정의 변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아니므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합니다.
- 실제 소요량 보다 많은 발주 내역은 입고일자를 사전에 협력업체와 조정하여 연기하는 것이 좋으며,발주취소로 협력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보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49. 고객사의 주문이 변경되어 당사의 생산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품도 일단 발주를 취소하고 2~3 주 후에 재발주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하는가요 ?

- 당사의 생산일정의 변경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발주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합니다.
- 공정위는 판매 부진 등으로 발주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적정한 보상을 하고 발주를 취소하는 경우 등에만 정당한 위탁(발주) 취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0. ERP 에서 2 개월치 발주가 자동으로 나간 상태에서 거래처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부품의 발주를 취소하고자 하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하나요 ?

- 협력업체 귀책사유가 아닌 당사사정으로 발주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발주취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발주한 제품의 관련재고(완성품, 반제품, 원재료 등)를 모두 소진한 이후에 신제품으로 발주를 하는 경우라면 직접적인 위반 사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그러므로 설계변경시 기존 재고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고 기존 설계로 발주취소된 수량보다 변경 후 입고된 수량이 많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만약 협력사의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고 관련 내용을 보관해야 합니다.

51. 하도급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 공정위가 제시한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 (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 이하 같음)을 요구하는 경우

B.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C.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52. 외부 전문기관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에 해당하나요 ?

- 거래 목적상 꼭 필요한 기능에 대해서 입찰이나 견적요청시 포함된 사항이면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초 견적요청 등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계약 기간 중에 요청하는 것은 부당한 경제적의 이익의 강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3.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은 어떤 것들인가요 ?

- 하도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특약이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의미합니다. 공정위가 제시한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교부한 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부담시키는 행위

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③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④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인허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⑥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⑦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⑧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⑨ 그 밖에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54. 하도급 법에서 이야기하는 기술자료란 무엇인가요 ?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사의 기술자료를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 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심사지침에서 규정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③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55.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기술자료를 해외자회사에서 사용하는 것도 기술자료 유용에 해당하나요 ?

- 당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국내외 자회사도 별도법인이므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공유하는 경우도

기술자료의 유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6. 수급사업자의 경영수준 등을 평가하고자 요청하는 원가자료 등도 기술자료에 해당하나요 ?

- 원가자료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료로 인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원가자료를 업체평가에 반영하는 목적에 대하여 기술자료제공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자료를 추후 가격 협상 등의 근거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기술자료의 유용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57. 수급사업자가 당사에 공급하는 제품을 생산시 투입할 인력을 당사가 지정해도 되나요 ?

- 투입하는 인력을 “정규직”이나 “경력 00 년 이상 숙련자”, “업계에서 인정되는 고급인력” 등으로 입찰이나,견적요청시부터 명시하였다면 해당인력의 투입 혹은 활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수급사업자가 해당 자격을 보유한 인원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력을 지정하여 교체를 요청하거나, 추가 투입을 요청하는 경우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8. 품질문제가 많은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품질 점검 등을 목적으로 당사가 불시에 수급사업자의 생산시설, 생산인력을 확인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도 하도급법 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

- 품질 점검 등은 수급사업자와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하도급법 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당사가 임의로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출입하거나,생산시설 등을 점검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만 기재하고 실제로는 적용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하도급법의 “부당한특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9.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구매업체를 선정하거나, 변경할 때 당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 하도급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

- 최초 견적을 요청하거나 입찰참여를 요청할 때 해당 사항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최초 견적/입찰 요청시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0. 현재 당사가 A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B 업체에 무상사급을 주어 첨가제를 투입하여 당사에 납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업체가 불량품을 공급하여 B 업체가 불량품을 당사에 납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B 업체가 검사의무를 소홀히 하여 당사에 피해를 입힌만큼 해당물품을 반품 및 감액하여 지급하고, B업체가 A업체에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하도급법상에 문제가 되나요 ?

- A업체가 B업체에 공급한 제품은 실질적으로는 당사가 공급한 것이므로 해당원재료를 사유로 발생한 불량품을 반품하거나 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반품이나 부당한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61.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 공정위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정조치
-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수정,향후 재발방지 등을 명하는 행위
Ex) 부당한 단가인하 시정명령
: 인하한 금액을 업체에 지급

② 과징금
- 하도급대금의 2배이내의 과징금 부과
Ex) 부당한 단가인하가 적용된 거래금액의 2배 이내 과징금 부과

③ 벌금
-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 내지는 3억 이하의 벌금 부과

④ 과태료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허위 자료 제출 등에 적용)

⑤ 고발 : 공정위에서 검찰에 고발조치

Ⅴ. 불공정거래 행위

Ⅴ. 불공정거래 행위

◈ 부당 공동행위

1. 부당공동행위란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나요 ?
2. 부당공동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3. 가격담합을 인정하는 예외사례가 있나요?
4. 다른 사업자를 따라서 가격이나 판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
5. 사업자들끼리 담합하여 상품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요?
6. 경쟁업체 전원이 담합하여 입찰을 기피하거나 유찰시킨 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
7. 부당한 공동행위는 어떤 제재를 받게되나요 ?

◈ 기타 불공정 행위

1.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3.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가요 ?
4. 동일규격 상품을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처별로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나요 ?
5. 경쟁사업자 배제란 어떤 내용인가요 ?
6.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무엇인가요 ?
7. 거래강제란 무엇인가요?
8. 거래상지위 남용이란 무엇인가요 ?
9. 구속조건부거래란 무엇인가요 ?
10. 사업활동 방해란 무엇인가요 ?

Ⅴ. 불공정거래 행위

◈ 부당 공동행위

1. 부당공동행위란 어떠한 행위를 의미하나요 ?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타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의 결정,유지 등 공정거래법 제 19 조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으로 공정거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 19 조 1 항)

①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③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상품의 생산 또는 거래시에 그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⑧ 입찰담합행위

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즉 둘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러한 부동공동행위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근절에 공정거래 관련법규 집행의 제 1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부당공동행위(담합)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 담합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의 2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 포함
(Knowing wink can mean more than words
- 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

-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이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카르텔이 성립됩니다.

② 카르텔 성립요건으로서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합니다.

-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 도 6341 판결)

-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금지의 대상이 됩니다.

- 가격담합. 입찰담합은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분석없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3. 가격담합을 인정하는 예외사례가 있나요?

-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관련 규정은 공정거래법제 58 조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 제 59 조(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 및 제 60 조(일정한 조합의 행위)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간의 운임 공동결정

- 그 외에 가격담합 등을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19 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대해서는 산업합리화,연구.기술개발, 불황 극복 등의 목적을 위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4. 다른 사업자를 따라서 가격이나 판매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도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

- 사업자간에 직접적인 의사교환 등을 통한 전면적인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경쟁사업자의 행동을 인식하고 경쟁사업자들이 하는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의식적 동조행위라 하며 이 경우 제반정황으로 보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됩니다

5. 사업자들끼리 담합하여 상품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가요?

- 사업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자신들이 생산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한다면, 이는 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을 서로 합의하여 결정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 19 조 1 항 6 호*에 위반됩니다.

  *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 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6. 경쟁업체 전원이 담합하여 입찰을 기피하거나 유찰시킨 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나요 ?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합니다.
  경쟁업체들간 합의에 의해 경쟁입찰을 수의 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됩니다

7. 부당한 공동행위는 어떤 제재를 받게되나요 ?

- 부당 공동행위 관련 제재는 행정적인 제재, 형사적 제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①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공정위는 명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관련매출액의 10% 한도 내 부과

② 형사적 제재

-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2년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양벌규정(70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③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 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입은 제 3 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불공정 행위

1.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거래거절이라 함은 어떤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자가 행하는 공동의 거래거절과 기타의 거래 거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의 거래거절: 공동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특정의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서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많고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도 상호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당한이유가 없으면 위법이 됩니다
- 기타의 거래거절 :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거절을 함으로써 거래거절을 당한 상대방이 다른 거래처를 찾기가 쉽지 않고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 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2.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 차별적취급이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로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집단적차별 취급 등 4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① 가격차별 :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거래조건차별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③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 수량, 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

④집단적 차별취급 :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

3.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가요 ?

- 대량구입과 소량구입에 따라 공급하는 가격의 차이가 있더라도 대량구매에 따른 공급자의 비용절감효과 등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가격차별이라면 차별적 취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동일규격 상품을 단독으로 거래하는 업체에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고 경쟁상품과 경쟁이 치열한 거래처에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해당하나요 ?

- 주거래처와 경쟁상품과 경쟁이 치열한 거래처간의 거래가격을 부당하게 현저히 차별하여 거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거래행위(차별적 취급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경쟁사업자 배제란 어떤 내용인가요 ?

- 공정거래법 상에 명시된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는 2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부당 염매
  자기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부당 고가 구입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6. 「부당한 고객유인」 이란 무엇인가요 ?

- 부당한 고객유인이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①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②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부당한 표시·광고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또는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경쟁사업자의 것이 실제보다 또는 자기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 또는 불리한 것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③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경쟁사업자와 그 고객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의 방법으로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7. 「거래강제」란 무엇인가요?

- 거래강제란 자기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끼워팔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

② 사원판매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 또는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

③ 기타의 거래강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8. 거래상지위 남용이란 무엇인가요 ?

-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아래의 5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구입강제
  ② 이익제공강요
  ③ 판매목표강제
  ④ 불이익제공
  ⑤ 경영간섭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란 거래상대방에 대해 당해 사업자와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사업경영상 커다란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해 사업자의 요청이 자기에게 현저히 불이익이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또한 이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처 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 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9. 구속조건부거래란 무엇인가요 ?

- 사업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침해하여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함으로서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이 2 가지로 구분합니다.
  ① 배타 조건부 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②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10. 사업활동 방해란 무엇인가요 ?

-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기술의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등이 있습니다

Ⅵ. 대규모 유통업법

Ⅵ. 대규모 유통업법

1. 대규모유통업자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
2.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모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
3. 계약추정제도란 무엇인가요 ?
4.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란 무엇인가요 ?
5.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란 무엇인가요 ?
6.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란 무엇인가요 ?
7.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란 무엇인가요 ?
8. 기타 불이익 금지란 무엇인가요 ?

Ⅵ. 대규모 유통업법

1.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의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3천㎡ 이상 면적의 점포를 운용하는 업체 중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① 도매업만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함. (단, 도소매업을 모두 하는 경우 소매업부분의 매출액과 면적으로 판단)

② 편의점은 직영점 매출과 가맹점에 공급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하여 판단함.

2. 입점업체나 납품업체에 모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 납품업체 뿐만 아니라 입점업체(매장임차인)과도 서면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② 납품 방법, 납품 장소 및 일시

③ 상품대금의 지급 수단 및 지급 시기

④ 상품의 반품 조건

⑤ 매장 임차료(매장임차인인 경우에만 해당), 상품판매대금에서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납품업자가 판매수익/수수료외에 부담하는 비용

⑥납품업자,매장임차인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게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는 경우 파견조건, 파견비용 분담여부 및 조건

⑦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제 12 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에 관한 내용

⑧ 하나의 점포에 복수의 매장이 있는 경우 매장의 위치 및 면적, 매장 설비비용의 분담여부 및 조건

3. 계약추정제도란 무엇인가요 ?

-납품업자 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계약사항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발송하지 않은 경우 납품업자 등이 통지한 서면의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걸로 추정하는 제도입니다.

4.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금지란 무엇인가요 ?

-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않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되며 사전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납품업체가 분담하는 판촉비용이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의하여 판매촉진비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란 무엇인가요 ?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이 가능합니다.
  ① 대규모 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제반비용(인건비 포함)을 부담하는 경우
  ②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의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③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④ 특약 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 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 등을 파견받는 경우
  단, 이러한 경우에도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고용한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는
  상품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야만
  합니다

6.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란 무엇인가요 ?

- 대규모유통업자는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요구해서 안되는 정보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① 납품업자 등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②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③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 횟수,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④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 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7.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란 무엇인가요 ?

-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8. 기타 불이익 금지란

-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이 자신의 법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 등에게 불리하게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불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